성산 더리브 포레스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5-277-1025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11.14.(금)	26.01.05.(월)	26.01.12.(월)	26.01.16.(금)	26.01.19.(월)~ 26.01.21.(수)	26.01.22.(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홍보관 내 분양 상담전화 (☎**055-277-1025**)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전화 폭주로 인하여 상담전화 연결이 안될 경우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등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에 따른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O		X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1.05.(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5910270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1.14.(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5000420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6.01.12.(월)	26.01.16.(금)	26.01.19.(월)~26.01.21.(수)	26.01.22.(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성산 더리브 포레스트' 주택 홍보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63번길 22-57 미래웨딩캐슬 2층)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창원시 **성산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없습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34-1 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4~22층 3개 동 총 258세대 중 일반분양 143세대 중 59A/B타입 잔여 21세대**

■ **입주시기** : **2027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5910270	01	059.3860A	59A	13	103	101,102,201,302,502,601,702,801,902,1102,1201,1302,1401
	02	059.3960B	59B	8	103	103,104,304,403,1403,1504,1704,1803
	합 계			21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세대]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층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60%)_ 이자후불제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계약시)	계약후 15일이내	1차(10%) 26.03.31	2차(10%) 26.07.31	3차(10%) 26.10.30	4차(10%) 27.01.29	5차(10%) 27.04.30	6차(10%) 27.07.30	입주지정일
59A	103동 1,2호	1	2	136,183,921	233,881,079	370,065,000	10,000,000	27,006,500	37,006,500	37,006,500	37,006,500	37,006,500	37,006,500	37,006,500	111,019,500
		2	1	136,878,335	235,073,665	371,952,000	10,000,000	27,195,200	37,195,200	37,195,200	37,195,200	37,195,200	37,195,200	37,195,200	111,585,600
		3~5	2	137,573,120	236,266,880	373,840,000	10,000,000	27,384,000	37,384,000	37,384,000	37,384,000	37,384,000	37,384,000	37,384,000	112,152,000
		6~10	4	138,267,168	237,458,832	375,726,000	10,000,000	27,572,600	37,572,600	37,572,600	37,572,600	37,572,600	37,572,600	37,572,600	112,717,800
		11~14	4	139,840,001	240,159,999	380,000,000	10,000,000	2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114,000,000
59B	103동 3,4호	1	2	130,272,000	223,728,000	354,000,000	10,000,000	2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106,200,000
		3~5	2	131,589,440	225,990,560	357,580,000	10,000,000	25,758,000	35,758,000	35,758,000	35,758,000	35,758,000	35,758,000	35,758,000	107,274,000
		11~18	4	132,921,600	228,278,400	361,200,000	10,000,000	26,120,000	36,120,000	36,120,000	36,120,000	36,120,000	36,120,000	36,120,000	108,360,000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농협**	**355-0094-0866-53**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의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니 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5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1홍길동'으로 기재)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1.16.(금) ~ 2026.01.25.(일)**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1.16.(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제출 대상 및 유의 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본인	- 홍보관 비치 , 개인정보수집안내 (신청자용)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이후 신규 발급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구분 : 본인발급,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서류제출 및 계약 / 제출서 : 교보자산신탁(주)]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본인과의 관계확인)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 배우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 포함)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을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제출 대상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관련 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계속하여 90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 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포함하여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사업주체가 증빙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의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본인 외 모두 제3자)	○		위임장	본인	- 홍보관 비치, 당첨자의 인감이 날인 필요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7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6.01.22.(목) 10:00 ~ 15:00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무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1.05.(월))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해당서류	비고
공통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분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계약금 입금 영수증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제3자 대리계약 시 (본인 외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아파트 계약위임용 (계약자 본인발급분에 한함)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예비입주자 동 · 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 · 호 배정 일시 : **26.01.22.(목) 16:00**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 대로 동 · 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26.01.22.(목)** 동 · 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무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1.05.(월))**이후 발급분에 한함
- 예비입주자 동 · 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비고
		계약 시	입주지정일	
59A	13,200,000	1,320,000	11,880,000	
59B	13,200,000	1,320,000	11,880,000	

- 타입별 확장 선택형 유형에 따라 평면이 상이하며, 확장 분양가 등 해당내용을 반드시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농협	355-0094-7707-13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상기 계좌로 입금 후 홍보관에 납부 영수증(입금증, 이체증) 제출하여야 합니다. (홍보관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착오 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선택안	제조사명	설치위치 및 수량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59A/59B	선택 ①	LG전자	거실, 안방	4,532,000	453,200	4,078,800	
	선택 ②	LG전자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7,502,000	750,200	6,751,800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이하 시스템 에어컨) 선택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유상옵션 선택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은 제안된 사항에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아파트 공급 금액과는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계약은 계약자가 별도 계약하는 추가선택 사항이며,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홍보관 타입별 유니트에는 LG전자 제품이 전시용품으로 전시되어 있으며, 타입별 설치 위치 및 수량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디자인 및 사이즈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거실 스탠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냉매매립 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 비용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냉매매립 배관(거실, 침실1) 등의 미설치로 인한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크기는 본공사 시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시스템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냉매박스, 냉매매립 배관 및 에어컨용 전기콘센트 설치는 제외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냉매매립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에 기본 설치되며, 시스템 에어컨 계약 이후 선택 취소 시, 기본제공 품목인 냉매 매립배관의 시공은 불가하오니 양지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홍보관과 달리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의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에어컨 냉매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 미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하며, 옵션계약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천장형 냉매 배관이 설치되며,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기구 위치 및 기타 시공 여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 선택 품목 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 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2) 현관중문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약식표기	구성 내용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 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자동형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59A/59B	유상	AL금속 프레임(실키베이지) + 브론즈 패턴유리 (천장형 센서, 스위치)	1,727,000	172,700	1,554,300	• 72A 샘플하우스 설치
		기본	벽체 설치 + 벽지 마감				

※ 현관 중문 추가 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현관 중문은 주택형별의 구조 및 현관 크기에 따라 중문의 개폐 타입 및 사이즈, 색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홍보관 등의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홍보관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은 본 공사 시 동급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 특성상 59C타입은 자동형 현관 중문 설치가 불가하며, 수동형 여닫이 도어(바닥 프레임 없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벽과 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의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특성상 도어 개폐 시 벽체에서 돌출되며, 돌출 사이즈는 타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선택 시 주택형에 따라 디딤판의 크기, 디자인, 위치는 미선택 시와 상이할 수 있으며, 현관 중문 미선택 시 현관 디딤판과 마루 사이에 재료분리대가 설치됩니다.

• 현관 중문 선택 시 주택형에 따라 벽체의 길이 또는 가구의 크기, 디테일, 디자인, 위치는 미선택 시와 상이할 수 있으며, 현관장의 길이와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동형 여닫이 도어는 댐핑 기능이 없어, 물리적인 충격에 파손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추가 선택품목(주방, 알파룸 등) 중복 선택 여부에 따라 본 공사 시 마감 간섭 부위의 재질 및 디테일 등이 홍보관과 상이하게 시공됩니다.

3) 리빙 스타일 에디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약식표기	구성 내용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 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고급화 (거실, 욕실)	59A	유상	[거실] 아트월 에디톤 월 맥스(900x2300) + [욕실1, 욕실2] 스마트 환기휀(욕실 복합환풍기) + 원형 방습등(욕조/샤워부스 위)	1,496,000	149,600	1,346,400	
	59B			1,100,000	110,000	990,000	
	전타입	기본	[거실] 아트월 포세린 타일(600x600) + [욕실1, 욕실2] 조명 일체형 환기휀(욕조/샤워부스 위)				

※ 리빙 스타일 에디션 추가 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주택형별의 구조에 따라 설치범위, 위치, 사이즈, 색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홍보관 등의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홍보관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은 동급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빙 스타일 에디션] 선택품목은 인테리어 통합 패키지 옵션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욕실1(공용), 욕실2(부부) 천장에는 무선 리모콘이 포함된 스마트 환기휀(욕실복합환풍기) 힘펠 제품(휴젠뜨3, FHD3-C150P)이 설치되며, 거실 아트월 벽에는 LX하우시스 에디톤 월 맥스 제품(루나 라이트)이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홍보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미 선택 시 욕실1(공용) 욕조 상부, 욕실2(부부) 샤워부스 상부 천장에 조명 일체형 환기휀 힘펠 제품(HV3-81JG)만 설치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아트월 월 맥스 자재는 친환경 복합 스톤층 벽장재로 일반 타일과 특성이 상이합니다.

4) 주방 스타일 에디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약식표기	구성 내용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 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주방 고급화	59A	유상	주방 상/하부장 연장 + 엔지니어드스톤(벽/상판:프리미엄급) + 주방가전(3구 인덕션+빌트인 전기오븐+12인용 빌트인 식기세척기) + 가구 FIX판넬	6,809,000	680,900	6,128,100	
		기본	타일(벽:300x600) + 엔지니어드스톤(상판:일반급) + 3구 가스 쿡탑				
	59B	유상	주방 상/하부장 연장 + 엔지니어드스톤(벽/상판:프리미엄급) + 주방가전(3구 인덕션+빌트인 전기오븐+12인용빌트인 식기세척기) + 가구 FIX판넬	6,171,000	617,100	5,553,900	
		기본	타일(벽:300x600) + 엔지니어드스톤(상판:일반급) + 3구 가스 쿡탑				

※ 주방 스타일 에디션 추가 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주택형 별 평면 구성이 상이함에 따라 [주방 스타일 에디션] 추가 선택품목의 구성 내용이 타입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주방 스타일 에디션] 선택품목은 인테리어 통합 패키지 옵션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주방 상/하부장 연장 및 아일랜드 하부장은 유럽산 서랍재, 국산 수저분리함, 무선충전 콘센트, 후라이팬 서랍, 대형 사각 싱크볼이 포함되며, 주방가전은 3구 인덕션(하츠 SSIH-3605TTLB), 빌트인 전기오븐(삼성전자 NQ36A6555CK), 12인용 빌트인 식기세척기(삼성전자 DW80F71Y1SEW)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홍보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미 선택할 경우, 확장 시 기본제공 품목으로 기본형 주방가구(기본형 서랍재/수저분리함, 일반 언더 싱크볼), 도기질 벽 타일(300X600), 일반급 엔지니어드스톤 주방 상판, 3구 가스 쿡탑(나비엔매직 GRB-5003)이 설치됩니다.
- 타입 별 설치범위, 위치, 색상, 가구 및 마감의 길이, 구성 등이 상이함에 따라 본 공사 시 설치 범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 시 물의 흘러내림 또는 물 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연결부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자재 특성상 나타나는 현상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 여부에 따라 가전 설치로 인한 주방 가구의 길이가 축소될 수 있으며, 홍보관 등의 안내 자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미설치되는 기본제공 품목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의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기구의 개별 위치 변경은 불가하며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추가 선택품목(주방 키친핏 에디션, 주방 업 스토리지 등) 중복 선택 여부에 따라 본 공사 시 마감 간섭 부위의 재질 및 디테일 등이 홍보관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인덕션,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 설치 전 수도, 전기 등의 공급을 위한 매립호스가 설치되며, 이에 대한 시공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가전제품 품목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됩니다.

• 제품 성능 개선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은 제품의 단종, 변경, 성능향상 등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으며 주택형별의 구조 및 평면 여건에 따라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가전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주방 키친핏 에디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약식표기	구성 내용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 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주방 냉장고장	59A	유상	비스포크 키친핏 냉장고 패키지 + 냉장고 설치 공간장(상부장 포함) + 키큰인출망장	6,435,000	643,500	5,791,500	
		기본	냉장고장(설치공간)				
	59B	유상	비스포크 키친핏 냉장고 패키지 + 냉장고 설치 공간장(상부장 포함) + 키큰인출망장 + 가구 FIX판넬	6,952,000	695,200	6,256,800	
		기본	냉장고장(설치공간)				

※ 주방 키친핏 에디션 추가 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주택형별에 따라 설치되는 가전기기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기기 및 가구 등이 제공되는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키친핏 에디션] 선택품목은 인테리어 통합 패키지 옵션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비스포크 키친핏 냉장고 패키지는 1DOOR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로 구성됩니다.

• 해당 패키지는 삼성전자 제품(냉장: RR40C7995AP(우)/RR40C7895AP(좌), 냉동: RZ34C7965AP(우)/Z34C7865AP(좌), 김치: RQ34C7945AP(우)/RQ34C7845AP(좌), 페어키트)으로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홍보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제공되는 가전은 타입에 따라 사양, 색상, 도어 개폐 방향, 설치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삼성전자 비스포크 키친핏 가전제품은 B2B 전용 모델이며, 상기 표기된 바와 같이 주택형별로 맞춤 구성된 세트로만 판매하고 있으므로 상품의 조합 및 설치위치, 모델, 디자인, 색상은 주택형 별로 상이할 수 있고, 계약자가 임의로 개별선택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타입 별 가구의 길이, 구성 등이 상이함에 따라 본 공사 시 설치 범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미설치되는 기본제공 품목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다른 추가 선택품목(주방, 알파룸 등) 중복 선택 여부에 따라 본 공사 시 마감 간섭 부위의 재질 및 디테일 등이 홍보관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설치되는 인덕션 가전은 기본 제공되는 후드와 연동기능이 없는 제품이오니, 계약 전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가전 –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빌트인 냉장고의 문 열림 방향은 동일 주택형 일지라도 평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선택 및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가전제품 품목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됩니다.
• 제품 성능 개선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은 제품의 단종, 변경, 성능향상 등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으며 주택형별의 구조 및 평면 여건에 따라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가전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침실 업 스토리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약식표기	구성 내용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 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자녀방 붙박이장 (침실2)	59A/59B	유상	붙박이장	1,243,000	124,300	1,118,700	
		기본	미설치				

※ 침실 업 스토리지 추가 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타입별 평형에 따라 가구의 형태, 크기 및 설치 위치가 상이하오니, 계약 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가구의 도어, 손잡이, 하드웨어, 레일, 악세서리 등의 디테일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납성 개선 및 시공상의 이유로 인해 가구의 크기 및 구성, 하드웨어 사양, 마감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미 선택 시 각 침실의 콘센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드레스룸 업 스토리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약식표기	구성 내용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 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수납강화 (안방)	59A	유상	붙박이장(선반형)	2,013,000	201,300	1,811,700	
		기본	미설치				

※ 드레스룸 업 스토리지 추가 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평형별, 타입별 레이아웃에 따라 59A타입 안방에서만 유상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하부에는 서랍, 상부에는 이동 가능한 선반형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본 공사 시 설치되는 가구의 치수, 디테일, 액세서리 및 하드웨어(힌지, 레일, 스위치 등) 사양 등은 안내자료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수급에 따라 가구 등의 마감재 색상, 패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농협**	**355-0094-7707-13**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상기의 계좌로 입금 후 홍보관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 제출하여야 합니다.(홍보관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착오 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국토 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시, 분양계약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 금액 안내 :「인지세법」제3조 1항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 세액	**총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과세 대상으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시점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연대하여 각각 50%씩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계약자의 발코니 확장비 금액을 확인 후 위 과세기준표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재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분양계약에 한하여 분양계약자와 연대하여 1/2를(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 출력되므로 직접 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c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적의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개별부담금이 제외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 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 호수를 적용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입주증 발급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단, 연체료 납부 시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 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지를 제외함)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 · 2 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 · 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대금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주택법」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시공자
상호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교보자산신탁㈜	에스지씨이앤씨㈜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62, 1층(신촌동, 양곡아파트 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A, B동 7, 8층(서초동, 교보생명보험(주) 서초사옥)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염곡동)
법인등록번호	194271-0008678	110111-1617434	110111-0327555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성산더리브포레스트.com)**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 위치 및 분양문의 : '성산 더리브 포레스트' 주택 홍보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63번길 22-57 미래웨딩캐슬 2층) / 055-277-1025**